

의안번호	2217575
의 퇴 인	이종욱 의원
회 답 일	2026. 7. 28.
추계번호	26B1614

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)	시·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(제1항) 1. 공동집하장 등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<신설> 2. 수산부산물의 수거·운반 등 수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에 드는 비용<신설> ※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 내용 구체화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(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시·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·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
- 해양수산부는 활용가치가 높은 수산부산물의 발생, 처리, 재활용 전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체계 구축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

1) 제8조(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·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[표 1]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활성화 지원 관련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사업내용	2026
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(3140-355)	(자원순환인프라구축)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수산부산물의 발생, 처리, 재활용 전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체계 구축	6,234
	(수산부산물재활용활성화) 법정 통계조사, 연구 및 홍보 등을 통해 그간 폐기 및 방치되었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 도모	950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-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 내용을 공동집하장 등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 및 수산부산물 수거·운반 등 수산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고용에 드는 비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라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 대상, 지원의 기준·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하여 예측하기 곤란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